

#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이 순 관 <보험감독원 분쟁조정2국 조정역>

## 1. 사고의 개요

1988년 1월 9일, 신청인 O씨와 피신청인 K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3동(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층4계건 1동 290평 중 2·3·4층 180평내 수용)에 소재한 건물을 대상으로

보험목적 : 원·부자재 및 반·완 제품 일체

보험금액 : 5천만원

보험기간 : 1988년 1월 9일~  
1988년 7월 9일  
(6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기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화재사고는 1988년 6월11일 20시경 위 보험목적물이 소재한 4층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발생해 옥상 가건물에 있던 완제품과 원·부자재 일부가 소실되었다.

## 2. 서로의 이견

### 신청인

① 질권자인 G상사로 부터 추가 보험가입요청이 있어 1988년 6월초에 장기화재보험료와 본 화재보험의 추가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피신청인 소속의 H총괄대리점에 지급했고

② 동 대리점에서는 해당보험료를 화재사고가 나기전인 1988년 6월 10일에 피신청인에게 입금시켰는데

③ 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수용

장소와 관계없다하며 피신청인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

① 추가부보를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변경 승인신청서를 H총괄대리점이 당사에 제출한 것은 사고이틀후인 6월 13일 10시경으로 승인신청서를 검토하던중에 화재사고통보가 접수되어 승인배서하지 않았고

② 옥상가건물내에 수용되어있던 동산에 대해선 계약자가 추가가입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보험료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③ 대리점에서 작성한 6월10일자 보험계약변경 승인신청서와 같은 날짜로 발행된 영수증에는 추정보험료가 4만5백26원이나 실제 입금액은 4만원인데도 해당보험료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당사로서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3. 심의

본건 분쟁사안을 심의한 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본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지급결정을 하였다.

① “...1988년 6월 4일 피신청인을 대리하는 H총괄대리점이 본건 화재보험의 건물내 동산 보험금액의 증액 및 야적동산의 추가가입

등 보험계약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와 장기화재보험료 및 소화기구입대금으로 40만원을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이때, 위 대리점이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40만원에서 장기화재보험료(31만5천원)와 소화기 구입대금(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만5천원에 맞추어 건물내 동산과 야적동산의 보험금액을 각각 3천만원 증액하고 보험기간의 만료일을 7월 9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건 화재보험계약이 낙성·불요식의 보험계약임을 감안할 때 1988년 6월 4일경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리하는 위 대리점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야적동산의 추가가입에 따른 추가보험료납입 이후에 발생한 본건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에서 본 화재보험계약변경내용에 따라 보상책임이 있다 하겠다...”

## 4. 맺는 글

보험계약에 대해 구 상법과 현행 상법은 각기 달리 정의내리고 있다. 구 상법에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각기 달리 정의내리고 있으나 현행 상법에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되는 통일적 정의로서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638조)고 규정하고 있다.

곧, 보험계약은 낙성(諾成)·불요식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고 합의외에 별도의 급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상법 제656조에 의하면 보험료를 지급하기까지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견 요물계약처럼 보이지만, 이는 보험자의 책임기간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험계약성립은 보험료의 지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험료지급전 쌍방의 합의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불요식 계약에 속한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보험자는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로 하고 있으므로 실무편의상 보험자측이 미리 인쇄한 보험청약서가 교부되어 계약자의 의사표시는 정형적인 청약서에 의함이 통례이고,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성립은  
보험료지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험료 지급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불요식 계약에  
속한다.**

정형적인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있다. (상법 제640조) 그러나 보험청약서는 법률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증권 또한 계약성립 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증권에 불과할 뿐이지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다.

낙성·불요식계약이라는 보험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보험계약내용의 변경도 보험계약의 체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실무상으로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험변경승인 신청서양식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어 동 신청서에 소정의 내용을 기입하고 기명날인을 한 후 보험자

측에서 이를 승인함으로써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요식화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보험계약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 화재사고 이전에 신청인과 H총괄대리점 사이에 옥상야적동산에 대한 추가보험가입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추가보험료가 신청인으로부터 대리점에 납입되었다면, 설령 본건 보험변경신청에 대한 승락이 피신청인의 지점이나 본점차원에서 없었다하더라도 이는 대리점과 보험회사간의 내부적 절차문제로 볼 수 있고,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권과 보험료수령권 등의 대리권한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추가보험가입 등의 대리행위도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건 해결의 핵심적 증거자료라 할 수 있는 H총괄대리점의 확인서·보험료영수증 및 무통장입금확인증 등의 내용에 의하면 1988년 6월초 이미 신청인과 위 대리점사이에 야적동산을 추가부보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대한 보험료납입이 사고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지급판정을 내린 것이 다. ㉞